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3. 28.(화) 11:00 < 3.29.(수) 조간 > 배포 2023. 3. 28.(화)

1차관, “철강-조선업계 상생으로 친환경 전환 공동대응 필요”

- 장영진 1차관, 3. 28일「철강업계-조선업계 상생협약식」서면축사

- 양 업계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3.28.(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개최한『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의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뤄온 철강-조선업계가 산업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친환경 전환 등 산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추울수록 몸을 맞대는 펭귄처럼 업종 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상생협약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의 이슈를 발굴하여 함께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의 이해득실에 흔들릴 수 있음에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주신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도 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철강-조선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철강산업은 조선산업에 주요원료인 후판을 공급*해 왔으며, 조선산업은 철강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바, 양 업계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로서 함께 성장하여 왔다.

* 후판 가격은 조선 생산원가의 20% 차지
** 철강 수요산업 비중 중 조선산업은 약 13.7% 차지(산업연구원)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업계는 상생협력 및 동반발전을 위해 ①반기별 실무위원회 개최, ②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적 공동세미나 개최, ③상생협력 연구용역 등 양 업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 임】 1. 철강-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2. 철강-조선 상생협력 협약식 및 공동세미나 개요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담당자	서기관	이재연 (044-203-4691)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3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철강-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철강-조선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간 업무협약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양 협회"라 한다)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이하"양 업계"라 한다)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양 협회가 상호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인 양 업계의 상생협력 및 동반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방식) 양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와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양 업계 간 애로사항 해결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반기 1회 실무위원회 개최한다.
2. 양 업계 간 정보 공유 및 중장기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3. 공동 연구용역 등 그 밖에 양 업계가 상생협력과 동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 협력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 (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 (효력 및 해지)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제4조(비밀유지)는 협약 해지 이후에도 협약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협회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3 월 28 일

한국철강협회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부회장
변 영 만

KOSHIPA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최 규 종

붙임2 **철강-조선 상생협력 협약식 및 공동세미나 개요**

□ 추진 배경

○ 철강-조선 양 업계의 상생협력과 동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철강·조선 상생협력 협약**」 체결 추진

* 「**조선·철강산업 공동세미나**」 **정례화** ('22.6.28 제1회 세미나 개최 → '23.3.28, 제2회 세미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3.3.28.(화) 14:00~17:00 / 트레이드 타워 중회의실

* 사전환담, 상생협약식, 공동세미나 순으로 진행

○ **(참석)** 조선/철강업계 임직원,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철강세라믹과장), 전문가 등 약 50여명

○ **(주관)**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프로그램(案)

시간		내 용	비고
14:00~14:30	'30	**VIP Tea Time**	· 51F 접견실
14:30~14:35	'5	**안 내**	· 철강협회(사회)
14:35~14:55	'20	**모두발언 및 축사**	· 발언 : 양협회 부회장 또는 전무 · 축사 : 산업부 차관(서면)
14:55~15:10	'15	**철강-조선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	· (MOU 체결) 양 협회 * 부회장 또는 전무 · (기념촬영) * 양 협회 임원 및 산업부 관계자
15:10~16:55	'90	**철강-조선산업 공동 세미나** **【발표】** (조선) 산업전망 및 환경규제 강화 영향 (철강)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한국 철강산업 발전전략 (공통) 철강-조선 상생협력 연구 추진(Kick off)	· 삼성증권 한영수 수석연구위원 · 포스리 이윤희 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15	**【질의 응답】**	
16:55~17:00	'5	**마무리 및 폐회**	